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

4. 계약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이용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 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④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⑤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단 이용자와 관계없거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④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⑥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③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는 해지 처리 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고지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①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월 이용 한도액 및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내역	
월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91%(감경9%)		
		94%(감경6%)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수급자부담금	15%(일반)	건강보험공단 85%	본인 부담금이 15%
		9%(감경)	건강보험공단 91%	본인 부담금이 9%
		6%(감경)	건강보험공단 94%	본인 부담금이 6%
		0%(수급자)	건강보험공단 100%	본인 부담금이 0%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장기요양수가 안내

등급구분		수가	본인부담(15%)	본인부담(9%)	본인부담(6%)
6시간이상 8시간미만	1등급	53,360	8,000	4,800	3,200
	2등급	49,420	7,410	4,440	2,960
	3등급	45,620	6,840	4,100	2,730
	4등급	44,070	6,610	3,960	2,640
	5등급	42,500	6,370	3,820	2,550
	인지지원등급	42,500	6,370	3,820	2,55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66,360	9,950	5,970	3,980
	2등급	61,480	9,220	5,530	3,680
	3등급	56,740	8,510	5,100	3,400
	4등급	55,210	8,280	4,960	3,310
	5등급	53,640	8,040	4,820	3,21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4,820	3,210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1등급	73,110	10,960	6,570	4,380
	2등급	67,720	10,150	6,090	4,060
	3등급	62,570	9,380	5,630	3,750
	4등급	61,000	9,150	5,490	3,660
	5등급	59,450	8,910	5,350	3,560
	인지지원등급	53,640	8,040	4,820	3,210

– 비급여 항목대상

비급여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전년 동일)

비급여	간식(오전+오후)	점심	1일 식대	이용일수(예)	20일 식대(예)
	1,000	3,000	4,000	20	80,000

– 끝 –